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9.12.2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24)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9.12.24, 2013.7.18)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